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공직자윤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 중 청소원, 건물 관리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,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공직자윤리법」(법률 제19854호, '23.12.26 공포, '24.6.27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전담기관 직원 중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

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 예외 기준 마련(제3조제4항)

청소원, 건물 관리원, 직업 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

나. 정보제공동의서의 명칭 변경(제5조의5 제1항) 및 회원권의 정의 마련

(제5조의5제5항 신설)

재산등록시 정보제공항목에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, ‘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’를 ‘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동의서로’ 명칭을 변경하고, 회원권의 정의를 마련함

다.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 연장(제27조제5항)

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을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(1.1~2.28)에서 정기재산변동신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함

라. 민간인재 대상 취업승인 사전협의 기간 확대(제34조제4항)

채용계약시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시부터 취업승인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직위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말한다”를 “말하며,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”이란 청소원, 건물 관리원, 직업운동선수, 상담원 및 조리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(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의5의 제목 “(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)”을 “(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와 부동산자료”를 “, 부동산 자료, 자동차 자료 및 회원권 자료(이하 “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”이라 한다)”로, “부동산정보”를 “부동산정보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“회원권”이란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,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등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

을 말한다.

제27조제5항 중 “정기변동신고기간에”를 “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”로 한다.

제34조제4항제2호 중 “채용계약 시”를 “채용 공고 시부터 계약 시까지”로,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직위 또는 인력에 대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등록의무자) ① ~ ③ (생략)	제3조(등록의무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에서 “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말하며,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”이란 청소원, 건물 관리원, 직업운동선수, 상담원 및 조리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(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5(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) ① 법	제5조의5(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) ① -

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
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
 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
 금융자료(가상자산에 관한 자료
 를 포함한다)와 부동산자료를
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
 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
 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
 정보 제공동의서(이하 “동의서”
 라 한다)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
 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
 다.

1. 2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27조(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
 가신청 등) ① ~ ④ (생략)

 -----, 부동산 자료, 자
 동차 자료 및 회원권 자료(이하
 “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”이
 라 한다)----- 부동산
 정보 등 -----

 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른
 “회원권”이란 골프회원권, 승마
 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, 종
 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
 회원권 등 시설물을 배타적으로
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
 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
 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
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
 을 말한다.

제27조(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
 가신청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

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<u>정기 변동신고기간에</u>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⑥ (생략) 제34조(취업승인) ① ~ ③ (생략)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<u>채용계약 시</u> 소속기관장이 전문성·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3. (생략)	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정기 변동신고기간의</u>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----- ----- -----. ⑥ (현행과 같음) 제34조(취업승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채용 공고 시부터 계약 시까지</u> ----- ----- <u>위하여</u> <u>직위 또는 인력에 대해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52